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 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2001. 4. 20.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4월 14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1년 4월 14일
- 다. 상정일자 : 제7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2001. 4. 20.)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치수방재과장 이동호

가. 제안이유

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규모공사의 품질 관리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위탁대상은 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서울특별시비 공사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요시설물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및 치수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로 규정함. (안 제4조)

-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내.
 - 위원장 등 :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이 지도록 규정하고, 구청장은 그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13조)
-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수탁협약사항 준수 등 수탁기관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2조)
-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등을 위탁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함. (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조례안은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100억원미만의 소규모공사 중 마포구청장이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지정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요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및 치수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안 제4조에는 구에서 시행하는 시비공사 및 구비공사 중 구청장이 판단한 주요시설을 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 공사 및 치수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구가 설치한 마포개발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되는 한시적인 소규모공사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구청장이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소규모공사 감독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공중하도록 규정하였음.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해당공무원이 일반행정업무와 병행 수행하고 있어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독하기가 불가하였으나 감독체계를 개선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공사의 품질향상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동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는 사료되나,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안 제5조 내지 안 제15조는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실정에 맞게 적용은 하였으나 안 제10조 후단에 규정된 운영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시설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하여 규정한 동 조례안에서는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사료되므로 안 제10조 후단에 규정된 운영경비는 수탁기관에서 소요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11조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은 동 조례안 내용상 적절치 않은 규정이므로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과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6조에서 서울시 및 구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의 규정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공개모집의 원칙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공기업의 육성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는 사료되나 이해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형평성 등에 대한 이론이 있을 것으로도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소규모공사란?
- 답변요지(이동호 치수방재과장)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원 미만의 공사를 말함.
- 질의요지(홍성환 위원) : 동사무소에서 하던 소규모공사업도 포함되는가?
- 답변요지(이동호 치수방재과장) : 포함됨.
- 질의요지(김영식 위원) : 현재 공사감독은 부서별로 담당 공무원이 잘하고 있는데 조례제정으로 주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
- 답변요지(신동문 건설교통국장) : 소규모공사의 품질관리 기능을 향상시키고 담당공무원의 부조리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추진코자 함.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100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최소단위는 정하지 않고 모든 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 답변요지(신동문 건설교통국장) : 소규모공사중 서울특별시비공사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하는 것임.

○ 질의요지(유웅봉 위원) : 공사 감독업무 위탁시 공사완료후 하자가 발생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 답변요지(신동문 건설교통국장) : 시공업자 및 공사 감독업무 수탁기관 양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

5. 토론요지 : 수정(안) 가결할 것을 동의

6. 수정(안) 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1. 4. 20. 신봉현 위원외 1인
나. 수정이유

○ 동 조례안의 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코자 함.

다. 수정골자

○ "하거나,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함. (안 제10조)

○ "(사용료 징수 등) ①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비용 등을 수탁기관에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징수한 비용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비용징수 등)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공자가 수탁자의 공사자재 등에 대하여 품질검사 등 지시·감독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로 하여금 시공자로부터 당해 비용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함. (안 제11조)

7. 심사결과 : 수정(안) 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사항 : 수정(안)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에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01. 4. 20.
제 안 자 : 총무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동 조례안의 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코자 함.

2. 주요수정골자

- "하거나,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함. (안 제10조)
- "(사용료 징수 등) ①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비용 등을 수탁기관에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징수한 비용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비용징수 등)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공자가 수탁자의 공사자재 등에 대하여 품질검사 등 지시·감독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로 하여금 시공자로부터 당해 비용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함. (안 제11조)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10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구 예산사업의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u>하거나,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u></p>	<p>제10조(운영지원) 할 수 있다.</p>
<p>제11조(사용료 징수 등) ①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비용 등을 수탁기관에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징수한 비용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11조(비용징수 등)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공자가 수탁자의 공사자재 등에 대하여 품질검사 등 지시·감독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로 하여금 시공자로부터 당해 비용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p>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1. 4 . 14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규모공사의 품질관리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 가. 위탁대상은 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 중 서울특별시비 공사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요시설물 공사, 조경 공사, 기계설비 공사 및 치수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로 규정함.(안 제4조)
- 나.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명 이내
 - 위원장 등 :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라.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이 지도록 규정하고, 구청장은 그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및 제13조)

- 마.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수탁협약사항 준수 등 수탁기관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 바.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등을 위탁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함.(안 제15조)

3. 제정근거

- 가. 지방자치법(2000.1.12 법률 제6115호) 제95조
- 나. 건설기술관리법(2000.1.16 법률 제6369호) 제28조의4
- 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2000.3.28 대통령령 제16765호) 제50조 및 제52조제1항
- 라.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2000.7.15 조례 제3760호)
제2조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함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2001.2.26~3.18)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함(2001.4.13)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중 일부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공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원미만 공사로써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감독업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
3. “주요시설물 공사”라 함은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4. “조경공사”라 함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5. “기계설비 공사”라 함은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치수공사”라 함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관련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위탁대상은 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중 서울특별시비 공사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로 이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시설관리공단, 다른 행정 기관·법인·단체 또는 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치한 공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1. 주요시설물 공사
2. 조경공사
3. 기계설비 공사
4. 치수공사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소규모공사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 ②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회의운영 및 업무협조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토목담당주사로 하고, 위원회의 제반 회무와 회의록의 정리·보관을 관장하도록 한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구 예산사업의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비용 등을 수탁기관에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징수한 비용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무의 자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수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명령 등을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보칙) 구청장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 및 구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